

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97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8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자 : 김태수의원(찬성자 11명)
- 나. 제 안 일 : 2017년 3월 23일
- 다. 회 부 일 : 2017년 3월 27일
- 라. 상 정 일 :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2017년 4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태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최근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.
-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“필요”를 “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”로 함(안 제8조제1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개정안은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.

※ 본 조례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,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.

가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법인의 지원근거 명확화(안 제8조제1항)

현행	개정안
제8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<u>필요한</u>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8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운영 또는 사</u> <u>업에 필요</u> -----.

- 안 제8조제1항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0조1)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고,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,
-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1) 「대한민국 헌법」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

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(이하 "등록법인"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- 현재, 2017년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 예산은 3천만원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.
 - ※ 2016년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현황
 - 서울시 :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3천만원 지원
(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)
 - 자치구 : 8억 6,445만원
-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 -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2항2)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, 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4조3)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바, 동 조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 이외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2)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생략

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
3) 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(이하 "등록법인"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필요”를 “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<u>필요</u>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8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운영</u> <u>또는 사업에 필요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